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84

발의연월일: 2021. 5. 13.

발 의 자: 장경태·장철민·홍성국

오영환 · 신동근 · 노웅래

이원택 • 전용기 • 유정주

김남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소득·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해 실행되었던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구축 아파트 패닉바잉, 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구매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, 이른바 '청포족(청약포기족)'이란 말까지 생성되기도 해 청약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너무 낮은 소득기준으로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
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 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,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·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87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"3천만원"을 "3천5백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2천만원"을 "2천5백만원"으로, "3천만원"을 "3천5백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	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
대한 소득공제 등) ①・② (생	대한 소득공제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	3
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	
저축(이하 이 조에서 "청년우	
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"이라 한	
다)에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4</u>
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	<u>년 12월 31일</u>
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	
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	
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	
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	
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	
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	
원을 한도로 한다.	
1.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	1
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	
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	
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	

Ó]	대성	1-0	근	항	거
ΗÌ	ЧП (а	٠ <u> </u>	. 또	\Rightarrow	イス !

- 가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<u>3천만원</u> 이하인 근로 소득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 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 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
- 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등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2천만원</u> 이하인 사업소득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<u>3천</u>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

2. (생략)

④ ~ ① (생 략)

가
<u>3천5백만원</u>
나
2 <u>천</u>
5백만원
<u>3천5백만원</u>
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